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
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보건의료정책적 필요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또는 발생할
우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공의 수련 등에 관하여 특례를
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수련 및 전문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특례

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
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
제5조, 제9조, 제11조, 제18조 등에 따른 수련 및 전문의 자격 인정에 대하여
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(수련 및 전문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특례)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5조, 제9조, 제11조, 제18조에 따른 수련 및 전문의 자격 인정 등에 대하여 「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 설>	제22조(수련 및 전문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특례)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5조, 제9조, 제11조, 제18조에 따른 수련 및 전문의 자격 인정에 대하여 「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의료인력정책과	
연락처	044-202-2435 / 2436